

미국 대학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 - 공과대학과 연관 지어서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미국 공과 대학생이 어떤 식으로 산업재산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학교육 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1.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차이점

미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선 미국 교육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국 법대의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한 분야를 들자면 법과 대학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학부에 법대가 있는 반면, 미국 대학의 학부 과정에는 법대란 것이 없다. 장차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학부 과정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



박 충 수

특허청 심판원 심사관

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해야만 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야 비로서 법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 제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능한 변호사들을 양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변호사들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며, 이것이 미국의 국력 혹은 경제력 때문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미국의 법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대에서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만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허법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 변리사(patent agent), 또는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공계 과목을 소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갖지 않은 법대생들은 대부분 특허에 관련된 과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물론 법대의 특허법 강좌에서 이공계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강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학생들은 아무리 많은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졸업 후 특허에 관한 실무에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이공계 전공자만 특허법 강좌를 수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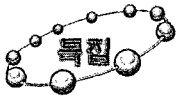
강좌는 법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공과대학의 학부 혹은 대학원에는 특허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다. 특허법은 엄연히 법률 과목이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고 싶으면 법대에 진학하라는 논리라 생각된다. 물론 공대 대학원생이 법대에서 개설된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공과 대학생이 법대 2,3학년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하는 공과 대학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미국 법대 1학년때는 민법, 형법, 계약법, 헌법등 기본법들만을 배우고, 2학년이 돼서야 비로서 특허법을 비롯한 본인이 원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에서의 특허법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부는 일견 법대생들만의 전유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2. 미국의 공과 대학생을 위한 특허 교육

그러나 많은 미국 공과 대학생들, 혹은 공대 졸업생들이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러 미국 대학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는 Cornell대학처럼, 공대 자체 내에서 특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ornell대학의 경우, 공대 도서관에서 자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특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허 검색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다른 한 예는 법과 대학에서 여름 강좌를 개설하여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anta Clara 대학의 여름 강좌는 기본적인 인터넷에 관련된 법, 특허 분쟁 해결 방법, 라이선싱, 특허 관련 선행기술 자료 검색 기법 등 특허에 관련된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 강좌도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공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방학 중이라는 점과, 법대 강좌로서는 특이하게 공대 교수들도 일부 강의에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과 대학생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공과 대학생이 수강하기에 훨씬 부담이 적은 여름 강좌는 Franklin Pierce Law Center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강좌일 것이다. Franklin Pierce Law Center의 여름 강좌는 크게 지적 재산권법과 라이선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공대 출신들, 특히 회사의 특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대 출신들에게 유익한 코스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한 예는 Franklin Pierce Law Center처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를 1년에 마칠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George Washington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법과 대학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1년 과정의 LL. M(Master of Laws)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LL. M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대 출신들은 이 과정을 이용하여 특허법을 공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Franklin Pierce Law Center에서 제공하는 MIP(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프로그램은 아무런 법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이 MIP 과정을 통해서 특허법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이후 JD(Juris Doctor) 과정을 2년만 더 이수하여도 JD학위를 받고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일반적으로 JD 과정은 3년임). 한편, MIP는 특허법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기술까지 가르치는 매우 실용적인 강좌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특허 교육은 거의 모두 법과 대학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 법과대학이 우리나라 법대와는 달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과 대학생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도 특허법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법과 대학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